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임종득 · 이만희
김승수 · 박성훈 · 김재섭
김기현 · 백종현 · 박충권
권영세 · 김소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,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,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,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,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2제3항 신설).
- 나.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(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).
- 다.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(결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)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통일교육위원 결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.
- 라.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).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보의 제공,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“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”을 “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·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위촉 및 해촉”을 “위촉·해촉 및 제8항에 따른 전문교육”으로 한다.

- ③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새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전임 통일교육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⑧ 통일교육위원회는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(이하 “전문교육”이라 한다)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일교육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2(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용정보의 제공,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③ (생 략) 제10조의2(통일교육위원) ① (생 략)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 으로 위촉한다. 1. (생 략) 2. 제9조의2에 따라 <u>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</u>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10조의2(통일교육위원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 람</u> 3. (현행과 같음) <u>③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9항에 따라</u>

③ ~ ⑤ (생략) <신설> ⑥ (생략) ⑦ 통일교육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새로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전임 통일교육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</u> ⑤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 ⑧ <u>통일교육위원은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(이하 “전문교육”이라 한다)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.</u> 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 ⑩ -----위촉·해촉 및 제8항에 따른 전문교육-----.
--	--